

의안번호	2217199
의 퇴 인	이성권 의원
회 답 일	2026. 4. 22.
추계번호	26F1218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경우, 지방세는 2027년 1,463.2억원, 2029년 1,463.2억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4,389.6억원(연평균 1,463.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: 취득세 및 재산세,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6조)	-919.4	-919.4	-919.4	-2,758.2	-919.4
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4조)	-539.4	-539.4	-539.4	-1,618.2	-539.4
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·판매 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4조의3)	-4.4	-4.4	-4.4	-13.2	-4.4
합 계	-1,463.2	-1,463.2	-1,463.2	-4,389.6	-1,463.2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 (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)	○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기한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2	안 제14조 (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)	○ 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 등의 구매·판매용 등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
3	안 제14조의3 (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·판매 사업 등 에 대한 감면)	○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·판매사업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	
---	--	---	--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 (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)	○	
2	안 제14조 (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)	○	
3	안 제14조의3 (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·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2026년 국회에서 의결되어 2027년부터 시행된다고 전제
 - 향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한 해에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하여, 이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취득 당해연도에 전액 발생한다고 가정
 - 취득세는 취득일 후 60일 이내에 신고·납부하도록 규정(「지방세법」 제20조)
- 향후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 - 향후 동 제도에 따른 감면액은 최근 5년간(2020~2024년)간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
 - 동 제도의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은 2021년 1,120.9억원에서 2023년 742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24년 943.1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음

- 향후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 - 향후 동 제도에 따른 감면액은 최근 3년간(2022~2024년)간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
 - 동 제도의 최근 3년간 감면실적은 2022년 540.1억원에서 2023년 530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24년 547.8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음
- 향후 농업경제지주회사가 구매·판매사업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 - 향후 동 제도에 따른 감면액은 2024년 감면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
 - 동 제도는 2017년 감면 종료 이후 2024년 제도입되어 최근 가용한 실적이 2024년 실적만 존재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자경농민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6조)

(1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개요) 동 제도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
 -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한 임야와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(안 제6조제1항)
 - 감면대상: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
 - ※ 자경농민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을 의미
 - 감면율: 50%
 - 또한,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감면(안 제6조제2항)
 - 감면대상: 자경농민이 취득한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, 고정식 온실, 가축을

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, 창고(저온창고, 상온창고 및 농기계 보관용 창고만 해당)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

－ 감면율: 50%

○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

□ (감면실적)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2020년 892.0억원에서 2024년 943.2억원으로 변동

○ 동 제도에 따른 취득세 감면실적은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음

[표 2]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: 2020~2024년
(단위: 억원)

구분	2020	2021	2022	2023	2024	평균 (’20~’24년)
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등 (안 제6조제1항)	794.4	1,028.6	820.0	670.4	871.5	837.0
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 등(안 제6조제2항)	97.6	92.2	79.1	71.5	71.7	82.4
계	892.0	1,120.8	899.1	741.9	943.2	919.4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년도

(2) 추계방법

□ 향후 취득세 세수효과는 최근 5년(2020~2024년) 감면실적의 연평균 수준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추계

○ 향후 취득세 감면액은 최근 5년(2020~2024년)의 연평균 감면액(919.4억원)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정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취득세수 감소효과: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7	2028	2029
세수 감소효과	919.4	919.4	919.4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경우, 지방세는 2027년 919.4억원, 2029년 919.4억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2,758.2억원(연평균 919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: 취득세,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6조)	-919.4	-919.4	-919.4	-2,758.2	-919.4

나.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14조)

(1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개요) 동 제도는 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 등이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,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제도
 -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·판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(안 제14조제1항)
 - 감면대상: 농업협동조합중앙회,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,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·판매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·보유하는 부동산
 - 감면율: 취득세·재산세 25%
 - 농업협동조합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(안 제14조제3항)
 - 감면대상: 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 및 연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·보유하는 부동산
 - ※ 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 등은 조합공동사업법인, 어촌계, 산림계도 지방세 면제 대상에 포함
 - 감면율: 취득세·재산세 100%
 - ※ 단,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우, 동법 제177조의2에 따라 최저납부세제가 적용되어

동법의 면제 조항에도 불구하고, 85%의 감면율만 적용

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

□ (감면실적) 농업협동조합 등의 지방세 감면 실적은 2022년 540.1억원에서 2024년 547.8억원으로 변동

- 동 제도에 따른 취득세 감면실적은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음

[표 5]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: 2022~2024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세목	2022	2023	2024	평균 (‘22~’24년)
조합중앙회의 구매·판매용 부동산 등(안 제14조제1항)	취득세	0.8	0.2	0.7	0.6
	재산세	4.5	4.3	5.5	4.8
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(안 제14조제3항)	취득세	272.4	275.6	276.3	274.8
	재산세	262.4	249.9	265.3	259.2
계		540.1	530.0	547.8	539.4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년도

(2) 추계방법

□ 향후 취득세 및 재산세 세수효과는 최근 3년(2022~2024년) 감면실적의 연평균 수준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추계

- 향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액은 최근 3년(2022~2024년)의 연평균 감면액(539.4억원)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정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효과: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7	2028	2029
세수 감소효과 계	539.4	539.4	539.4
－ 취득세	275.4	275.4	275.4
－ 재산세	264.0	264.0	264.0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경우, 지방세는 2027년 539.4억원, 2029년 539.4억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1,618.2억원(연평균 539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: 취득세 및 재산세,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4조)	-539.4	-539.4	-539.4	-1,618.2	-539.4
－ 취득세	-275.4	-275.4	-275.4	-826.2	-275.4
－ 재산세	-264.0	-264.0	-264.0	-792.0	-264.0

다.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·판매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
(안 제14조의3)

(1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개요 및 연혁) 동 제도는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·판매 사업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,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제도로, 2017년 적용이 종료되었다가 2024년 재도입
 -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·보유하는 구매·판매·보관·가공·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,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(안 제14조의3)
 - － 감면율: 취득세 25%, 재산세 25%
 -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
 - 동 제도는 2014년 신설되어 2017년까지 감면이 적용된 후 종료되었으나, 2023년 세법개정으로 2024년부터 재도입
 - － 동 제도는 2014년 농협경제지주회사 신설 당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영위하던

- 구매·판매사업 등의 이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
- 이후 별도의 적용기한 연장 없이 2017년 12월 31일부로 감면이 종료되었다가 2023년 세법개정으로 2024년부터 재도입
 - ※ 단, 재도입 과정에서 기존 감면대상 중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

□ (감면실적) 2024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은 4.4억원 수준

[표 8]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: 2024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세목	2024
농협경제지주회사 구매·판매용 부동산 (안 제14조의3)	취득세	0.7
	재산세	3.7
계		4.4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2025년 지방세통계연감」, 2025.12.

(2) 추계방법

- 향후 취득세 및 재산세 세수효과는 2024년 감면실적(4.4억원)과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
[표 9] 개정안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효과: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7	2028	2029
세수 감소효과 계	4.4	4.4	4.4
- 취득세	0.7	0.7	0.7
- 재산세	3.7	3.7	3.7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·판매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경우,

지방세는 2027년 4.4억원, 2029년 4.4억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13.2억원(연평균 4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0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: 취득세 및 재산세, 2027~2029년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·판매 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4조의3)	-4.4	-4.4	-4.4	-13.2	-4.4
－ 취득세	-0.7	-0.7	-0.7	-2.1	-0.7
－ 재산세	-3.7	-3.7	-3.7	-11.1	-3.7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